

호우·태풍에 의한 재해유형

홍수·침수



유해·위험요인

- 배수로 정비 미비로 인한 건물 및 지하구조물 침수
- 집중호우·태풍으로 하천이 범람하여 침수 및 휨쓸림

예방대책

- 배수로 및 물막이판 등 정비 실시
- 호우·태풍 등 악천후 예상 시 사전 근로자 대피기준 마련 및 교육 실시, 위험작업 중지조치

감전



유해·위험요인

- 젖은 손으로 전기기계·기구 취급으로 인한 감전
- 태풍으로 무너진 전주, 전선 등에 의한 감전

예방대책

- 전기기계·기구의 절연 및 총전부 방호조치 실시
-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접지 실시

붕괴·매몰



유해·위험요인

- 토사유실 또는 지반약화로 인한 굴착사면 무너짐
- 배수불량으로 인한 옹벽 및 석축 붕괴

예방대책

- 사면 덮개설치 등 사전 우수 침투방지조치 실시
- 지반 굴착면 기울기 준수 및 주기적 계측 실시

호우·태풍 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



- 집중호우, 태풍 등에 따른 작업중지 등을 조치하고 있는가?
- 호우·태풍시 재난 위험장소(토사유실, 지반약화 등)가 있는지 사전 위험성평가 및 확인을 하였는가?
- 강풍 시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, 간판 등은 없는가?
- 호우 시 침수 위험은 없는가? (배수구 점검 실시)
- 침수 시 전기 감전의 위험은 없는가?
- 침수 시 오물 유입 등 위생상 문제되는 곳은 없는가?
- 침수 대비 양수기 등 긴급 복구 장비는 갖추어져 있는가?
- 정전 대비 비상구호 용품(손전등, 양초 등)이 구비되었는가?
- 자연재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및 비상 복구반을 구성·운영하고 있는가?
- 도급·수급 사업장이 합동 점검 및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위험상황 발생을 대비한 경보체계 및 대피방법 등을 논의하였는가?
- 자연재난에 대한 매뉴얼 마련 및 주기적인 훈련을 실시하는가?
- 호우·태풍 발생 후 복구시 조치사항 등이 정해져 있는가?



대응요령

급박한 산업재해 위험이 있는 경우,



즉시 작업중지하고 대피



호우·태풍 시 사업장 안전관리 이행수칙



고용노동부



산업재해예방
안전보건공단





호우·태풍 시 단계별·유형별 안전관리 이행수칙



호우·태풍 발생 전

-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한 위험 장소 여부 확인 등 사전 위험성평가 실시
-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책수립 및 유관기관(병원, 소방서, 경찰 등) 연락망 구축
- 유사 시 근로자 대피로 확보 및 교육 실시
- 사업장 소재 지역의 태풍 복상시기 및 호우특보 등 기상상황 수시 확인

호우·태풍 발생 시

- 집중호우 등 악천 시 작업중지 및 대피 실시
- 유리창, 가설물 인근 등 낙하물 우려장소 접근통제
- 기상정보 수시 확인 등 기상 변화 주시

호우·태풍 발생 이후

- 침수된 건물, 공장 등 설비재가동 전 안전점검 실시
- 복구 작업 시 안전보건수칙 준수 및 개인보호구 착용
- 사업장 주변 파손된 상·하수도, 도로 등 발견 시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



호우특보 발표기준

(주의보) 3시간 당 예상 강우량이 60mm 이상이거나
12시간 당 예상 강우량이 110mm 이상인 경우

(특보) 3시간 당 예상 강우량이 90mm 이상이거나
12시간 당 예상 강우량이 180mm 이상인 경우



대응대책

호우·태풍 예비
특보 발령지역

재택·유연근무,
휴가 적극 활용

급박한 산업재해
위험이 있는 경우

즉시 작업중지
하고 대피



위기상황, 긴급상황 시 신고전화

고용노동부 044)202-8968, 8972, 8899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052)703-0121~0129, 0111~0113
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)205-1541~3
재난신고 119 범죄신고 112 민원상담 110

업종별 조치사항

건설업

- 현장주변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및 조치
- 공사용 가설도로에 대한 안전확보
- 굴착사면 등 우수 침투방지조치 실시

건설업 외 (제조, 서비스업)

- 비상용 수해방지 자재·장비 확보 후 비치
- 전기기계·기구의 접지상태 등 사전 안전점검 실시

업종별 조치사항

건설업

- 강풍·강우 시 철골조립, 타워크레인 인상, 양중작업 등 야외작업 중지
- 굴착부, 맨홀 등 침수 우려 장소에 대한 근로자 출입금지조치

건설업 외 (제조, 서비스업)

- 젖은 손으로 전기기계·기구, 전선 등 접촉금지
- 지하층 등 침수된 장소의 출입통제(감전, 질식위험)

업종별 조치사항

건설업

- 현장 침수 후 복구·작업 재투입 시 사전 감전위험요소(분전함 등) 확인
- 주요 가설구조물(동바리, 비계, 흙막이지보공) 및 장비에 대한 사전 안전성 확인

건설업 외 (제조, 서비스업)

- 침수 등 손상된 기계·설비 등 점검 시 사전 전원차단 조치 실시
- 수해복구 등 고소작업 시 작업발판, 안전난간 설치, 개인보호구 착용